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순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9

발의연월일: 2015년 11월 13일

발 의 자:이순자, 김동욱, 박기열,

박운기, 박진형, 서영진, 성백진, 성중기, 신언근, 오승록, 우형찬, 우창윤, 이복근, 이신혜, 최판술
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, 어휘의 정비를 통해 조문을 개정하여 법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변경
- 나. 불필요한 용어의 삭제를 통한 조문 개정 (안 제1~4조,제6조)
- 다. 상위법령 규정 내용 중 미반영된 내용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법」「북한이탈주민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 중 "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"을 "매점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"를 "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2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3에 따라"로 하고, "신문판매대, 복권판매대, 매점"을 "매점"으로 하며, "한부모가족의 모(모) 또는 부(부),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"을 "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,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"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"신문판매대, 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(이하 "신문판매대 등"이라 한다)"를 "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(이하 "매점 등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3조 중 "신문판매대"를 "매점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신문판매대"를 "매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신문판매대"를 "매점"으로 하며, 같은조 제2호 중 "독립유공자유가족"을 "독립유공자 및 유가족"으로 한다.

제5조 중 "한부모가족의 모(모) 또는 부(부),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"을 "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,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"으로 한다.

제6조 중 "신문판매대"를 "매점"으로 한다.

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								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	독립유공자·국가유 공자 및 유가족	북한이탈주민			
1	장애등급 1~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		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		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		
2	장애등급 3~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 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		
3	장애등급 5~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						

※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 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 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
|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**매점** 및 식 | 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 , 「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제1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 | 는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, 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「국 민기초생활 보장법, 에 따른 수급자 중 (모) 또는 부(부). 독립유공자 및 유가 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 법, 제42조 , 「노인복지법, 제25조, 법, 제42조 , 「노인복지법,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 , <u>「독립</u>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제16조의2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2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6 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 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65세 이상인 사람, 한부모가족의 모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, 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유 공자 및 유가족,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**북한이탈주민**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의 범위 등) ① 〈생략〉 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,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.

제2조(적용의 범위 등) ① 〈현행과같음〉 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,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 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 | 음료용자동판매기(이하 "매점 등"이라 기(이하 "신문판매대 등"이라 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 가 10m²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.

제3조(사전공고) 서울특별시장(이하 " 시장"이라 한다)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청)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| 제4조(신청)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.

- 1.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(해 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 는 소정양식)
- 2. 장애인등록증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수급자, 독립유공자유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5조(계약)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(「장애인복지 법,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)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|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한부모가족의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한부모가족의

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m²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 다.

제3조(사전공고) 서울특별시장(이하 " 시장"이라 한다)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 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보에 게 재하여야 한다.

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.

- 1. 매점 등의 설치계약신청서(해당 시 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 정양식)
- 2. 장애인등록증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|법」에 따른 수급자, 독립유공자 및 유 |**가족**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5조(계약)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(「장애인복지 법,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)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가족(이하 "장애인 등"이라 한다)과 계 약하도록 하여야 하며. … 〈생략〉

제6조(사업의 의무) 제5조에 따라 계 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. … 〈생략〉

[별표]

<u>신문판매대</u>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							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<u>모자가정의</u> <u>여성</u>	독립유공자 유가족			
1	장애등급이 1-2 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 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 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 법」에 의한 <u>의료보호</u> 수급자			
2	장애등급이 3-4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 세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한부모가족 지원법제5 조의 <u>보호대상</u> 모자가정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 대상자			
3	장애등급이 5-6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 세대상자						

※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모(모) 또는 부(부), 독립유공자 및 유 모 또는 부,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, 국 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(이 하 "장애인 등"이라 한다)과 계약하도 록 하여야 하며. … 〈생략〉

> 제6조(사업의 의무) 제5조에 따라 계 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 리하여야 한다. … 〈생략〉

[별표]

<u>매점</u>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							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<u>한부모가</u> 족의 모 또는 부	독립유공 자.국가유 공자 및 유가족	<u>북한이탈</u> <u>주민</u>		
1	장애등급 1~2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 법」에 의한 <u>수급자</u>	국민기초 생활 <u>보장법에</u> 의한 수급자		
2	장애등급 3~4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 상자	미과세 대상자	한부모가 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 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 대상자	미과세 <u>대상자</u>		
3	장애등급 5~6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 상자						

|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이 순 자